

## 시론



장영수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인사권 통한 검찰개혁의 결말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한 검찰 개혁을 내세운 이래로 검찰인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개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인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추미애 前 장관에 의한 검찰인사뿐만 아니라, 박범계 장관에 의해 주도된 검찰인사에서도 친정부적 성향의 검찰들이 요직에 배치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번 검찰인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다. 수많은 검찰인사 중에서 이 지검장의 인사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이 지검장이지만, 김학의 前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인해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승진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검찰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완전

히 무너져내렸으며, 오히려 조국 前 장관부터 추진된 ‘인사권 통한 검찰개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인상만 강해질 뿐이다.

그 후폭풍은 검찰 내외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들의 출사표와 대한변협의 강도 높은 비난에 이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대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될 경우에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할 정도로 인사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된다. 이는 곧 인사를 잘못해서 만사를 망가뜨릴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인사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던 김영삼 前 대통령도 ‘정치 9단’이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인사의 달인’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 그는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하나회의 해체 등과 같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의 수십 년 동지들이었던 가신 그룹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인정에 쏠려 가신 그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것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스스로 한계를 구게 되었던 것이다.

인사권을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

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기용하고 반대의견을 멀리 할 경우에는 불통으로 인한 국정난맥상이 나타난다. 인사권이 더욱 오남용되어 국가사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위태롭게 된다.

정치개혁에서 인사권이 양날의 칼이라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서 인사권은 개혁의 본질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다. 객관성과 중립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수사과 재판을 지향하는 검찰과 법원에서 인사권을 앞세운 개혁이란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된 현재 상황에서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란 결국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증거가 확보되어 기소된 이 지검장은 승진하고, 의혹만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되는 것을 누가 합리적 인사라고 보겠는가?

진정한 의미의 제도개혁이란 그 제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검찰개혁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인사권을 앞세워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검찰 본연의 기능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미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에 정권과

유착하여 정권의 시녀로 불신되던 검찰이 결국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렸던 것을 벌써 잊었던 말인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역사가 액튼 경(Lord Acton)의 명언이 자신에게는 예외라는 오만이 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감사원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도 개헌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권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개헌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다. 대통

령의 어떤 권한도 주권자인 국민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과 무관한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마치 전제군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통치권자로 표현하면서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찰의 직제개편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알려진 직제개편의 내용은 여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법 설치법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축소판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수사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이 관철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더불어민주당 식의 ‘대못 박기’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권이 교체되면 그 대못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식의 무리수가 오히려 정권교체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